## <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변경시행일: 2020.03.31

3. 주요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정정 전	정정 후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u>			
<u>시한다.</u>	<u>행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	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u> 전액이 납입된 경			
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	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전자등록한다.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한다.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u>			
	<u>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u>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u> 은 관련법령·신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u> 은 관련법령·신탁			
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 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 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 ~ 2. <생 략>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 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생 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 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 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 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 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생 략>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 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⑨ ~ ⑩ <생 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⑨ ~ ⑩ <현행과 같음>

## [투자설명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현재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갱신			
9.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전략 정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의 투자전략, 위험	정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관리 및 수익구조		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가. 투자전략 및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u>결정하</u>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u>결정합</u>	
위험관리		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u>니다.</u>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		
		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	최근 결산일 기준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의 투자위험	이전 3년간 주간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	
	수익률 변동성(연	일 기준 <u>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u>	일 기준 <u>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u>	
	환산)	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0% 수준이	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12% 수준이	
		<u>므로</u> 유리자산운용㈜은 실제수익률 변	<u>므로</u> 유리자산운용㈜은 실제수익률 변	
		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낮은 위험 수준인 5등급 (낮	중 위험이 낮은 위험 수준인 5등급 (낮	
		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13. 보수 및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2.연도별 설정 및				

## 유리자산운용

환매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sup>도 3 로 7</sup>					
1.집합투자업자에	기준일 현재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관한 사항	'' ''   갱신					
	<u></u> 보호를 위해 필요한	L 사항				
1. 투자자의 권리	자본시장법(시행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에 관한 사항	령) 개정사항	방법	방법			
	반영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u>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u>			
		<u>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	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			
		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	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②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	②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			
해지에 관한 사항		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나) 임의 해지		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			
공시에 관한 사항		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가. 정기보고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			
(2)자산운용보고서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u>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u>			
		<u>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	<u>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	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수익자가 <단서 생략>	다만, 수익자가 <단서 현행 과 같음>			
(3) 자산보관·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			
(3) 사진모판· 관리보고서		전략합자는 이 부자전략의 외계기간 중   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 근디포포시		표, 시전모전·된디모고시를 표구어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	교, 자전보전·전디모고시를 교수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			
		영구에는 지구시한국의 구극6권을 한   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영구에는 지구자한국의 구극6년을 한     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			
		배한 한테되자 또는 <u>한국에 구글세면</u> 글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에인 단메되자 <u>또는 단자중국기단</u> 로 중 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 생략>	어어 국립 또는 단시구단의 중립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 현행			
			교 기 이 이 이 입 의 의 . 의 년,			
	l		-1 EU'			

## [간이투자설명서]

• ** * - * * *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

<끝>.